

보도일시 (인터넷) 2023. 6. 30.(금) 06:00,
(지면) 2023. 6. 30.(금) 석간

배포 2023. 6. 29.(목) 14:00

국민의 아이디어, 해양수산 현장을 바꿉니다

- 규제혁신 대국민 공모전 우수과제 6건 발표, 현장밀착형 과제 발굴에 주력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2023년 해양수산 규제혁신 대국민 공모전(이하 공모전)*'의 우수과제 6건을 최종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 해양수산 현장의 불필요한 규제 개선을 위해 올해 4. 17.~5. 26. 진행, 총 73건 과제 접수

최우수* 과제로는 '어촌계 소유 양식업권 행사자 자격 완화'가 선정되었다. 어촌계원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고 어촌계 양식업권을 행사(임대와 유사)할 수 있는 자(준계원)의 자격요건(거주지 요건)을 현행 기준보다 완화하여 어촌계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넓히는 내용으로, 어촌지역 고령화로 인해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촌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우수 과제를 포함한 우수과제들은 해당 과에서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실제 규제 개선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우수 2건, 장려 3건 등 기타 수상과제 세부내용은 붙임 자료 참조

이번 해양수산 규제혁신 우수과제 선정을 총괄한 전재우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에 발굴된 과제들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등 유관기관과도 긴밀히 협력하여 앞으로도 해양수산 분야의 규제혁신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다양한 분야의 규제혁신 과제 발굴 및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공동으로 '항만물류 규제혁신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으며, 최근에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바다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연안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추진 예정이다.



담당 부서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책임자	과 장	홍근형 (044-200-5160)
		담당자	서기관	김수정 (044-200-5166)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사회규제팀	책임자	팀 장	오영곤 (02-3778-3440)
		담당자	전문위원	김준곤 (02-3778-3577)

붙임 1

해양수산 규제혁신 대국민 공모전 우수과제 목록

※ 응모과제 내용을 바탕으로 소관과에서 추진계획 마련 예정이며, 세부 내용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우수과제 : 총 6건 [1등(1건, 100만원), 2등(2건, 50만원), 3등(3건, 30만원)]

순위	제 목	과제 주요내용	담당부서
1 (최우수)	어촌계 소유 양식업권 행사자 자격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점)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라 어촌계 양식업권은 어촌계원 또는 준계원이 행사할 수 있으며, 준계원은 어촌계의 구역에 거주하고 어촌계 총회 의결을 받은 자로 정하고 있음 ⇒ (개선) 어촌계 고령화 등으로 어촌계 양식업권의 운영·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하므로, 양식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준계원의 거주지 요건을 완화하여 행사자 범위 확대 필요 * (현행) 해당 어촌계 구역에 거주하는 자일 것 → (개선) 해당 어촌계가 속해있는 시·군·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을 것 	어촌양식 정책과 (한성민서 044-200-5614)
2 (우수)	기능 중복을 고려한 선박 항해장비 비치의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점) 현행 규정상 선체길이 24미터 이상 어선은 자기컴퍼스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하나 자기컴퍼스는 AIS(자동식별장치) 등의 타 장비로 대체 가능하며, 일반선박(500톤 미만)은 AIS 설치 시 자기컴퍼스 비치의무를 면제하고 있음 ⇒ (개선) 선체길이 24m 이상인 어선의 경우에도 AIS가 설치되어 있다면 자기컴퍼스 비치의무 면제 필요 	어선안전 정책과 (이정미서 044-200-5551)
	원활한 도선 지원을 위한 예선 활용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점) 울산항의 기상악화 시 도선서비스가 중단되어 자동차 운송 선사 물류비 증가에 따른 수익성 감소, 울산항 매출세수 감소 및 현대차 수출 생산라인 중단 우려 ⇒ (개선) 기상악화 시 원활한 도선을 지원하기 위해 예선을 이동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항만운영과 (박찬수서 044-200-5771)
3 (장려)	창업어가 멘토링 관련 후견인 자격요건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점) 창업어가 멘토링 사업의 후견인 지원 자격 중 국가기술 자격증 종목을 수산양식기술사, 수산제조기술사로 한정하고 있어, 창업어가에 대한 멘토링 전문성 확보에 한계 ⇒ (개선) 사업지침 개정을 통해 어로기술사의 창업어가 멘토링 후견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여 멘토링 전문성 향상 추진 	소득복지과 (신상호서 044-200-5463)
	연근해 어선 선복량 관련 규제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점) 일본 중고선을 매매하여 노후 어선을 대체할 수밖에 없는 업종의 경우 선복량 제한 규정으로 인해 중고선 도입이 어려워 노후선박 조업에 따른 안전문제, 선원 수급의 어려움 발생 ⇒ (개선) TAC제도 강화보완, 어창용적 및 그물제한 등의 기타 수단을 통하여 남획을 예방하고, 현행 선복량 제한은 완화 또는 폐지 필요 	어업정책과 (김도한서 044-200-5518)
	해양수산 클러스터 입주기업 자격요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점) 해양산업 클러스터 내 입주자격을 핵심산업(해운항만물류 R&D) 관련 기업기관으로 제한하고 있는 상황으로, 핵심산업의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핵심산업에 해당되면서도 입주 요건을 갖춘 기업을 찾기가 어려운 실정 ⇒ (개선) 핵심산업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기업도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입주기업으로 선정·지원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항만물류 기획과 (박치현서 044-200-5757)

□ **규제혁신추진단 개요**

- (설립목표) 전직 공무원, 연구기관, 경제단체 등 민·관·연이 합동으로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불편을 초래하는 덩어리 규제 발굴 및 개선
- (주요업무) 현장 건의사항 등을 바탕으로 규제혁신과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규제혁신위원회 등 주요 협의체에 안건 상정

□ **주요 협력과제**

- **항만물류분야 규제혁신방안** (5.12 규제개혁위원회 보고, 5.15 발표)
 - 수출입 활동의 가·종점인 항만에서 항만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경제행위를 장려하기 위해 항만물류 전 과정에 걸친 규제개선과제 발굴

	분야	주요 내용
1	항만·배후단지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만개발계획과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불일치 시 계획 변경 절차 간소화 ○ 항만물동량 데이터 공유 범위 확대 ○ 항만구역 내 친환경 에너지 시설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명문화
2	입항·출항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출항 선박의 선원정보 입력 간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CR 기술을 활용한 선원·탑승객 입력프로그램 개발 및 화물품목코드 입력편의 증진 ○ 선박이 일시적으로 인접항만으로 이동 시 입출항신고 생략 ○ 항로 적기 준설 및 수심모니터링 강화, 항만개발사업계획 심사 기간 단축 (허가처리기한 20일→14일)
3	선적·하역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수업 등 항만운송 관련업의 등록기준(자본금 등) 합리화 ○ 항만기본계획 수정 시 양곡물동량 고려하여 대형 양곡부두 증설 검토

- **연안이용 활성화**를 통한 국민의 바다접근권 제고
 -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연안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중장기 검토를 통해 어장이용 개발계획 관련 기본지침 개정 등 관리체계 합리화

	분야	주요 내용
1	어장이용 개발계획 기본지침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어장 면허권자(시·군·구청장)가 어장 재개발 시 어업생산성 제고를 위해 어업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발계획 관련 기본지침 개정
2	연안이용 주체 상생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어장 등의 합리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장기적으로 연안이용 주체 간 상생협력 방안 마련